내부 정보 관리 규정

내부 정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본 규정은, 주식회사 JTC 및 주식회사 JTC 의 관계회사(이하, 「JTC 그룹이라고한다.) 에 대해 적용되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한다.)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신속·정확한 공시나 임원 및 종업원의 인사이더 거래를막기 위해, 회사내부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제2조 본 규정에서의 「내부정보」라 함은, JTC 그룹 또는 거래처와 관련된 별지에 게재된 업무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포함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기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2 본 규정에서의 「공시 책임자」란, 공시 규정 제2조 제 4항에 의해, 회사를 대표해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본 규정에서의 「공시 담당 부서장」이란, 주식회사 JTC 의 IR 실에 소속하는 공시를 담당하는 장을 말한다.
 - 4 본 규정에서의 「임원」이란, JTC 그룹의 이사(한국 상법 제 401조의 2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감사역을 말한다.
 - 5 본 규정에서의 「종업원」이란, JTC 그룹의 각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정사원/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연수생/촉탁 사원 및 파견 사원을 말한다.
 - 6 본 규정에서의 「주식 등」이란, 주식, 사채권, 신주예약권부사채권, 신주예약권증권, 이것들과 관련되는 옵션을 표시하는 증권/증서, 특정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도 이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7 제1항으로부터 제5항 이외에 본 규정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적용 범위)

제3조 공시, 인사이더 거래 및 내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 정보의 관리

(내부 정보의 관리)

- 제4조 임원 및 종업원은 업무상 파악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정보를 사내 및 사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2 대표이사는 내부 정보나 이것과 관련한 문서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시 책임자)

- 제5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JTC의 관리본부 담당이사를 공시 책임자로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 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 2 공시 책임자는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제정 및 운영에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해,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과 관련되는 감독
 - (2)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 상황의 점검 및 평가
 - (3) 내부 정보에 대한 검토, 관리 및 공시 가부의 결정
 - (4) 임원/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 (5) 내부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원·종업원에 대한 지휘나 감독
 - (6) 그 외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 3 공시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 정보 및 이것에 관련하는 각종 서류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외 내부 정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종업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4 공시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라고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5 공시 책임자는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 담당 부서 및 공시 담당 부서장)

- 제6조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IR실이 그 임무를 맡고, 공시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시를 담당하는 부문의 장이 그 임무를 맡도록 한다.
 - 2 공시 담당 부서장은 공시 책임자의 지원 아래,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제정 및 운영에 관련되는 업무를 실시하고,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되는 수행
 - (3) 내부 정보에 대한 검토, 관리 및 공시 가부 결정과 관련되는 공시 책임자와의 협의
 - (4) 임원/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책정
 - (5) 내부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원/종업원에 대한 지휘나 감독에 관한 공시 책임자에게의 지원
 - (6) 그 외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3 공시 담당 부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 및 이것에 관련하는 각종 서류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공시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회계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외 내부 정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종업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4 공시 담당 부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5 공시 담당 부서장은, 공시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 관리 제도의 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 담당자)

- 제7조 공시 담당 부서장은, 공시 담당 부서내에 공시 담당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공시 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 2 공시 담당자는 내부 정보 관리와 관련해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 정보의 수집, 검토 및 관리와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의 내부 정보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의 확인과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부서장에 대한 보고
 - (4) 그 외 대표이사.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의 필요로 인정한 사항

(내부 정보의 집중)

- 제8조 종업원,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 정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내부 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외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대표이사는, 제1항에 정하는 내부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 위하여 회사내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 사항 관련업무의 결재 과정에서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의 협력을 받게 할 수 있다.

(최대주주 관련 정보 관리)

제8조의 2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은, 최대주주와 관련한 공시 의무 사항 및 조회 공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의 적시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정보의 사외 제공)

- 제9조 임원/종업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회사의 거래처/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나 법률 자문/ 경영 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공시 담당자의 지원하에 관련 내부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의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은 공시 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 규정 제 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 정보의 공개

(공시의 종류)

제10조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 규정 제 1편 제 2장 제 1절에 따른 주요 경영 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 규정 제 1편 제 2장 제 2절에 따른 조회 공시
- (3) 공시 규정 제 1편 제 2장 제 3절에 따른 공정 공시
- (4) 공시 규정 제 1편 제 3장에 따른 자율 공시
- (5) 법 제 3편 제 1장에 따른 증권 신고서등의 제출
- (6) 법 제 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 규정 제 1편 제 2장 제 4절에 따른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 161조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법규에 따른 공시

(공시 대상의 확인)

제10조의 2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라 공정 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 규정 제6조 제 1항 제 4호에의한 주가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주의하여야 한다.

(공시의 실행)

- 제11조 공시 담당자는 제10조에 정한 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의 신속한 이행)

제11조의 2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에 의한 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기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공시 후의 사후 조치)

제12조 공시 책임자, 공시 담당 부서장 및 공시 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취소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시 규정 제 30조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스컴의 취재 등)

- 제13조 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에 관하여 매스컴 등에서 회사에 대한 취재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이 이에 응한다. 단,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공시 책임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종업원을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2 회사가 매스컴 각사 등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 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공시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의하여 배포할 보도 자료의 내용이 공정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료 배포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4 매스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 임원/종업원은 이를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도 내용의 확인)

제13조의 2 공시 책임자/공시 담당 부서장/공시 담당자/내부 정보의 발생 부서는 매스컴 등의회사에 관한 보도 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업 설명회)

- 제14조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경영 책무인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 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회사의 경영 내용, 사업 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 설명회는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3 공시 책임자, 공시 담당 부서장 및 공시 담당자는 기업 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의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전까지 거래소의 공시 제출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4 회사의 모든 임원/종업원은 기업 설명회의 과정에서 공정 공시의 대상 정보중 사전에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풍문)

제14조의 2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고 있는 경우 관련

- 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통하여 소문의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 정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확인의 결과, 해당 풍문이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의 요구)

- 제14조의 3 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었을 경우,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해당 요구의 적법성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은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 요구된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의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결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 3항을 준용한다.

제4장 인사이더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 제15조 임원 및 법 제 172조 제 1항 및 법시행령 제 194조가 정하는 종업원은 법 제 172조 제 1항상의 특정 증권 등(이하 「특정 증권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특정 증권 등을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 차익」이라고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주주(주권의 다른 지분 증권 또는 증권 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와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증권 선물 위원회가 제2항에 의한 단기매매 차익의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여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 차익의 금액
 - (3)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 차익의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날
 - (4)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공시 기간은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 차익의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 차익이 반환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특정 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제16조 임원 및 법 제 172조 제 1항 및 법시행령 제 194조가 정하는 종업원은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이하, 「매매등 」이라고 한다.), 그 사실을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등의 금지)

- 제17조 임원/종업원은 법 제 174조 제 1항이 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원 및 종업원은 거래처의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경우,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내부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거래처의 주식 등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공개 매수 정보 등에 관한 정의)

- 제18조 공개 매수 정보란, 당사 또는 타사가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공개 매수 실시 또는 공개 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실시 및 공개 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실시 중지를 결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개 매수 정보의 공표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개 매수 신고서 또는 공개 매수 철회 신고서가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었을 때.
 - (2) 복수의 보도매체에 공개 매수 정보가 공개된 후, 12시간이 경과한 경우.
 - (3) 자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 매수 정보를 금융 감독 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경우.

(공개 매수 정보의 전달 금지)

제19조 임원 및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 안 JTC 그룹 또는 거래처의 미공표의 공개 매수 정보를 안 때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공개 매수 정보에 대하여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이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부서장에게 전하는 경우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공표 공개 매수 정보에 근거한 주식 등의 매매 등의 금지)

제20조 임원 및 종업원은 미공표의 공개 매수 정보를 안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는 공개 매수 또는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임원에 의한 당사의 주식 등의 매매 등

(공매도 금지)

제21조 임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당사의 주식 등의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 등의 매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원 신고)

제22조 임원은 당사의 주식 등의 매매 등을 증권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 해당 증권 회사에 자신이 당사의 임원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매매 등의 보고)

- 제23조 임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매매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매 등이 있던 날로부터 5 영업일까지 증권 선물 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매매 등이 증권 회사에 대한 위탁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서는 해당 증권 회사를 경유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동 보고)

제24조 임원은 당사의 주식 등의 매매 이외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 부서장에 「당사 주식 등 이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비거주자)

- 제25조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이 말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원 및 종업원은 당사의 주식 등의 매매 등의 위탁 예정처인 증권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 해외 그룹 회사의 주식회사 JTC의 주주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인사 총무부 부장으로부터 주식매매 절차에 대한 별도 안내를 적시에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한다.

(교육)

- 제26조 공시 책임자·공시 담당 부서장·공시 담당자는, 공시 규정 제 36조 및 제44조 제 5항에 의한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되어,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부서장은 교육 내용을 관련 임원·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 2 대표이사는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제14조로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인사이더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처분)

제27조 임원 및 종업원이, 관계 법령, 본 규정 또는 이것에 관한 통지 등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중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임원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없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그 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의 개폐)

제28조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법무부문장이 기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규정의 공표)

제29조 본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했을 때에도 이와 같다.

부칙

-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실시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개정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개정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개정한다.

(별지)

1. 내부 정보

1. 4IT 6I	
No	항목
1	발행하는 주식, 처분하는 자기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	자본금 액수의 감소
3	자기주식의 취득
4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5	증자배당, 감자배당 또는 주식배당
6	합병, 해산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양수
8	업무상의 제휴 또는 제휴의 해소
9	중요한 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10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폐지
11	주식의 등록(상장을 포함한다) 또는 폐지의 신청
12	파산, 재생 수속 개시 또는 갱생 수속 개시의 제기
13	새로운 사업의 개시
14	재해에 기인하는 손해,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생긴 손해
15	주요 주주의 이동 및 등록, 주식 등의 등록 폐지가 되는 원인
16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소(송)의 제기, 판결 등
17	사업의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 재판 등
18	행정관청에 의한 처분
19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또는 어음 교환소에서의 거래 정지 처분
20	모회사 등과 관련된 파산 및 자기 이외로부터의 파산 신청 등
21	외상매출금, 대부금, 기타 채권 또는 구상권의 채무 불이행의 우려 발생
22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정지
23	실적예상, 배당예상의 수정 등 (별도·연결)
24	기타 회사의 운영, 업무, 재산 또는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실